### W-11.5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정

- 고위험 의료기기
  - 식약청 분류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 구조상 특징과 운영 형태, 사용 시 위험성 여부, 환자안전사고사례 등 검토하여 결정 제세동기, 마취기, 전기수술기, 멸균기 연 2회 예방점검
- 의료기기 예방 점검활동
- 1. 예방점검 대상 의료기기를 선정하고, 용도 및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예방점검 주기를 계획
- 연간예방 점검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계획 된 점검시기에 공지 및 예방점검을 실시
- 3. 고위험 의료기기 및 중위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계획된 점검시기에 외부업체로부터 예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기기에 대해서는 의료 기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예방점검을 실시
- 4.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해당 의료기기 점검자나 관리자가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
- 5. 점검을 실시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'예방점검(정상작동)확인' 라벨을 부 착
- 6. 사용금지 시에는 '사용 금지!' 라벨을 부착한 후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 자에게 전산으로 보고하여 처리
- 7. (원내 공지사항폴더→의료장비유지보수게시판에 접수)

## Q: 의료기기에 대해 교육을 받으셨습니까?

A : 의료기기 도입 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자 및 사용자는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으로 부터 사용법 및 취급 주의사항 교육을 받는다.

B :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자나 사용부서의 부서장은 부서원 및 신규 입사자에게 사용법, 취급 주의사항, 일상점검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.

## Q: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는?

A: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는 부서관리자에게 보고하고,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따라 QI실로 보고한다. (EMR ID, PASSWORD로 로그인→질 지표관리→환자안전관리→환자안전 보고서 작성) 보고를 받은 QI실에서는 환자안전보고체계에 따라 조치하고, 필요시 QPS 위원회와 의료기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원인 분석을 통해 조치한다.

# Q: 가장 최근에 예방점검이 완료되어 정상작동 확인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의료기기는 무엇인가?

A: 최근 예방점검 한 의료기기 목록 준비, 라벨 점검 필요

### Q: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?

A: 의료기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의공 업무 경력자로 해야 하나 적격자 가 없을 시 의료기기 사용부서 부서장이 안전관리 담당자가 된다.